

진 흥 회 계 시 관

재고 전자부품 및 설비의 거래알선 전산망 구축 안내

본회에서는 기구축되어 있는 전자종합전산망(ELAK-INS)상에 재고부품 및 설비의 거래알선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공급업체에게는 재고자산을 최소화해 유동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업체에게는 원자재 및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현재는 반도체 등 8천여종의 부품이 등록되어 무료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할 부품이나 설비가 있는 업체는 '구매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기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접속방법

- 모뎀접속
 - 통신 S/W를 실행후 "atdt01410"을 입력
 - hitel 첫 화면에서 "2번 정보체계"를 선택
 - "10번 과학/기술/연구" 선택
 - "25002번 EIAK-INS" 선택
 - ID 입력화면에서 ID가 없으면 "GUEST" 입력
 - EIAK-INS TOP화면에서 "GUEST"일 경우 700번 가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가입
 - ID 가입후 1일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즉시 사용이 필요하면 전산실(553-0941, 내선 252)로 연락
- 텔넷(telnet) 접속
 - IP Address : 210.114.131.10

- 통신 s/w(Neterm, 데이터맨프로 등)을 실행 후 Telnet 접속 환경을 설정
- 접속하면 ID 입력화면이 바로 출력됨 (이하 방법은 모뎀접속과 동일)

○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 가입 신청방법

- 절차 : 가입신청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본회심의 → 전산등록 → 통보

문의처

- 정보제공자 등록문의(553-0941, 내선 381, 382)
- 정보이용시 장애문의(553-0941, 내선 252)

'미·EU 통상 세미나' 개최

최근의 통상환경 WTO 출범이후 세계무역이외관상 자유화되고 있으나 선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뿐만 아니라 원산지 조사, 제품안전인증 등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는 WTO 제소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회는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과 EU의 이러한 통상정책들에 회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U집행위 반덤핑자문위원인 대표 및 양 지역의 본회 통상 고문 변화사를 초빙하여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사 및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앙망합니다.

문의처 : 본회 국제부

(TEL:555-6187, 553-0941(262, 263))

- 다 음 -

1. 일시 : 1998. 9. 21(월) 14:00
2. 장소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중회의실
3. 연사 : 미국 : Michael P. House
(본회 미국고문변호사)
 - EU : Edwin Vermulst
(본회 유럽고문변호사)
 - EU : Hans De Brabander
(EC집행위 반덤핑자문위 화란대표 :
화란경제성)
4. 내용
 - 미국의 통상정책
 - 미국 반덤핑법 중 Sunset Review(종료제
심)규정의 이해 및 아국 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 EU의 통상정책
 - EU의 반덤핑법
 - EC집행위의 반덤핑정책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

98우수 신개발 전자부품 전시회 및 콘테스트 참가안내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품
업체와 세트업체를 연계해 부품의 조기 국산화를
유도하고 국산부품의 사용촉진 방안을 모색키 위
해 동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전자부품 재료
업체의 기술개발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제3회 우수개발전자부품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오니 부품·재료·소재 등
관련업체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98 우수신개발 전자부품 전시회

- 목적

전자부품 업계의 신개발 부품 홍보 및 수요업
체에 대한 국산부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수입 의존
도가 높은 부품의 조기 국산화를 통해 대일 무역
역조개선

- 전시기간 : '98. 10. 21 ~ 10. 25(5일간)
- 장소 : 한국전자전(부품관 특별전시)
- 전시품목
 - 단독개발부품
 - 수급기업간 협력개발부품
 - 정책개발부품
- 전지품목 목록 제출일 : '98. 10 10(토)

제3회 우수개발 전자부품 콘테스트

- 목적
 - 전자부품, 재료업계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 수입 전자부품 및 재료의 국산개발 촉진
 - 수요업체에 대한 국산부품의 사용촉진 유도
- 대상
 - 최근 1년중 개발된 부품 및 재료
 - 개발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 신청기간 : '98. 8. 3~ 9. 15
- 시상식 : '98. 10월 초순
- 시상부문

구 분	부 문	시 상	시상인원
제품부문	최우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대 기업 : 1 중소기업 : 2
	우 수 상	전자산업진흥회장상 전자부품연구소장상	1개업체 1개업체
개인부문	공 로 상	산업자원부장관상	1명
		전자산업진흥회장상	4명

레바논 개최 국제전시회 안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98. 9. 10~13(4일간)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 Care Middle East 98)」 및 '98. 10. 23~26간 개최되는 「MBL 98(방송기자재 관련), MEPrint 98(인쇄기기 관련) 합동 국제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양대 전시회는 중동지역의 관련분야 최대 규모 국제전시회로서 매년 미·영·불·독·일 등 세계 주요국과 사우디, UAE 등 인접 아랍국에서 많은 수의 관련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전시회에서 세계 각국의 상품을 비교후 매매상담을 추진하는 레바논의 국내시장경향을 감안할 때, 국내 관련업체의 산발적인 출장 대신 동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구매상담이 보다 현실적인 시장개척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동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개최 개요>>

1.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 Care 98)
 - 개최기간 : 98. 10. 13~16
 - 개최주기 : 매년
 - 개최규모 : 1,500평방미터
 - 전시품목 : 치과용품, 병원용품 및 장비, 안경, 안경테
 - 임차료 : 평방미터당 280불(Net Space, Stand-Fitting & Lighting 포함)
 - 주최자 : International Fairs & Promotions
2. 국제방송기자재 국제전시회(MBL 98) + 국제 인쇄기술 국제전시회(MEPrint 98)
 - 개최기간 : 98. 10. 23~26

- 개최주기 : 매년
- 개최규모 : 5,000평방미터
- 전시품목
 - MBL 98 : TV Broadcast, Cable & Satellite, Professional Audio Technology, Media Companies & Service Providers, Film Production & Cinematography, Theater Fitting & Accessories, Photo Imaging Equipment, Lighting System
 - MPrint 98 : Printing Equipment & Supplies, Pre Press Equipment & Supplies, Pre Press & Printing Services
- 주최자 : International Fairs & Promotions
- 임차료 : 실내 평방미터당 290불
 - 주최자측에서 Standfitting Service 제공 조건
 - 납부시기 : 신청서 제출시 50% 98. 10. 20 한 잔여 50%
- 임차형태 : 면적단위 임차 또는 부스 임차중 택일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산업자원부(감사관실)에서는 부조리 제거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산업자원부 감사관실
(☎ 500-2356~8, FAX 503-9420)
- 신고방법 : 서류제출, 전화·FAX, 개별면담
- 처리절차 : 민원에 준하여 조사·처리

'전기용품 형식승인' 어떻게 달라지나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가 출범 20여년 만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거듭난다. 국제화, 시행주체의 민간이양, 사후규제강화, 제조자 책임 강화 등으로 대별되는 이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한다.

▲ **인증 및 시험** :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산업기술시험 평가연구소·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과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립기술품질원의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인증과 시험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품질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인증기관이나 국제수준의 시험자격을 갖춘 제조업체, 전문시험기관, 외국업체(수입품) 등 지정시험기관을 통하면 된다.

▲ **대상기기 및 업체** : 개정안은 기존 형식구분별 인증(카테고리인증) 대신 모델별 인증을 채택함에 따라 인증대상기기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대상품목 조정부분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현행 3백종(2종 67개 품목)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기술기준** :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제화에 초점을 두고 기술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형식승인과 달리 안전인증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나누어 제품을 개발했던 국내 제조업체들은 추가 제조원이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다.

▲ **수수료** : 안전인증 비용은 부평(산자부)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근본적으로 기술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시행주체가 민간에 이양됨으로써 빠르

게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물가와 연동되는 법정 수수료 특성상 재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 형식승인 수수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크게 오를 것이 확실하다.

▲ **사후관리·벌칙** : 인증주체가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우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제조자뿐 아니라 판매자, 보관·진열자까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안전인증 미표시제품 사용자, 안전인증 유사표시자,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인증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은 기존에 2백만원 과태료에서 벌금 1천만원 부과로 강화된다. 특히 불법 전기용품 유통자는 위반자 부담으로 본인 또는 정부가 해당제품을 수거, 파괴할 수 있다.

가전품 해외임가공 반입때 관세 면제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 가전제품을 생산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해외임가공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의견을 모으고 관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면세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의 값싸고 우수한 가전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대응, 국내 가전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의 총연구개발비(R&D) 중 최소 3%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8개 중앙부처와 10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R&D 관련 예산은 4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3천93억원(7.5%)이 배정됐으나 주택공사 등 일부 투자기관은 중소기업 비중이 0.3%에 그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수출보험단신

I. 수출보험제도의 약관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보상시 환차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및 보험금 지급비율을 95%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 수출업계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상시 적용환율의 변경

• 지원대상

- 이전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수출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폭 확대로 수출시와 보상시 환율차가 커짐에 따라 보험사고시 수출자가 환차손 부담하게 됨.
- 이에 따라 보상시 환율을 보험금지급시의 환율로 변경하여 수출자의 환차손 부담경감 및 수출보험의 질적개선 도모

• 적용종목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재판매)
- 수출어음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대금회수불능)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2. 보험부보율의 상향평준화

• 주요내용

이전에 대기업 부보율은 90%로 제한하여 보험사고발생시 손실액의 90%를 보상하였으나 최근 무역경쟁의 심화 및 자금조달 비용상승 등으로 수출자의 기대이익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차원을 위하여 부보율을 95%로 상향조정함.

- 적용종목 : 단기수출보험(선적전·후), 수출어음보험

주)부보율 : 보험으로 받아들이는 비율
(선적금액의 95%)

3.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대상기업 확대

• 수출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경우, 담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무역금융의 원활한 수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대상기업을 종전의 중소기업에서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였음.

4. 농수산물수출보험 부보율 상향조정

• 수출물품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국내조달비용이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대금을 초과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가격상승위험)의 경우 부보율을 60% 범위내에서 70% 범위내로 상향조정함.

5.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제도 개편

• 기존에 포괄보험 대상거래는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거래이었으나 수출업계의 요청에 따라 현지지사를 통한 재판매거래도 포괄보험 부보대상 거래에 포함함.

II. 중소기업 우대지원조치

1. 수출실적이 없는 신설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례보증지원

- 지원내용

- 설립한지 1년 미만의 신설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경우 무역금융소요액 이내에 서, 수출신용장이 없이 경우에도 3억원 이내에서 보증이 가능함.

- 특례보증 실시에 따라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담보부족 및 은행들의 대출기피로 무역금융을 활용하지 못하는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

- 지원종목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문의 02)399-6593)

2. 중소기업 전용 시장개척보험 제도의 개편

- 적용대상 확대 : 자기상표 수출상품 → 국내 상표 수출상품

- 부보율 상향조정 : 80% 범위내 → 95% 범위내

- 참가비용 회수기간 단축 : 1년 → 6개월

- 보험부보시 청약서만 제출토록하여 부보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지출 내역 및 수출증가상황 통지를 폐지하여 통지의무를 경감함.

